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 집 :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제 751 호
1980.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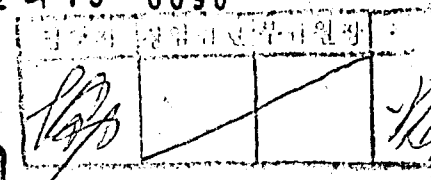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403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 3

◎ 규 칙
제 1841 호 :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 4
제 1842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 23

◎ 고 시
제 39 호 : 담수불판매장소지정 …… 24
제 40 호 :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 24
제 41 호 : 청계천 7 가구역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 25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2 호 : 을지로 1 가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 27
제 43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 32
제 44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지적승인 ····· 32
제 45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 33

◎ 공 고

제 36 호 : 청계천 7 가제 1,2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 33
제 3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 34
제 39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 35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880. 2.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인]

◎서울특별시조례제140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1" 조정수당지급표

구 분	수 당 액
2급 이상	30,000원
3급	25,000원
4급 갑류	23,000원
4급 을류	20,000원
5급 갑류	18,500원
5급 을류	18,000원
1종내지 3종고용원	17,000원
경노무고용원	14,000원

가산월액

1.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500원의 수당을 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2.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원에게는 월 40,000원의 수당을 해당 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3. 건산업무(천, 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의 수당을 가산지급한다.
4. 주임기술자면허를 소지하고 500kw이상의 전기공작물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의 수당을 가산지급한다.
5. 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된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의 수당을 해당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80. 2. 8.

◎서울특별시규칙제1841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산포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및 제13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구이상의 구역에 걸칠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
2. 산림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
3. 문화재보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지역
4. 도로법제12조, 제13조 및 제54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도와 고속교통구역(이하 "고속도로"라 한다)에서 면하는 지역등(면하는 지역등이라함은 해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전망되어지는 지역등을 말한다)
5. 철도선로용지 및 그로부터 전망되어지는 지역등
6. 공원, 녹지, 광장, 운동장, 경마장, 수유소
7.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 및 그 부지
8. 제1호내지 제7호 이외에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신청구비서류등) ①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사진과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
3.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타인 소유물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승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구비서류외에 허가증원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광고물제작업자의 등록) ①옥외광고물등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 3 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제 5 호서식에 의한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관리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조(금지지역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등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산포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계획법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제 7 조, 제 9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 및 기념물과 그 구역안
3. 산림법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중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
4. 공원법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
5. 관공서, 학교, 병원, 도서관, 기념관, 박물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유속선분시설과 그 경내
6. 고적, 묘지 및 화장장과 그 경내
7. 임상 및 기념비와 그 경내
8. 교량, 축대, 육교, 고가도로
9. 가로수 기타의 수목
10.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조명탑

및 가스 또는 유류탱크와 그 정내

11. 우편함, 수도탱크, 송중전화 및 화재경보기

12. 진망대 기타 진망을 위한 지역

13. 도로표지, 안전표지, 신호기, 보도책, 버스 또는 합승여객자동차의 주차장, 정류장표지등

14. 건물 각창문의 문자, 상표등 광고표시 다만, 정문에 상품명 표시를 제외한 기업체명 또는 상호, 영업주, 전화번호등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5.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의 전주 및 가로등주

16. 제1호 내지 제15호이외에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등

제6조(금지광고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2.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3. 야립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4.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및 차마인축에 의한 이동식 광고 다만, 자동차에 한하여 별표8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게시판 및 공보판 이외에 첨부하는 벽보류 및 첩기류의 광고물

6. 제작자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물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

8. 건물벽, 담장등에 게시시설없이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제7조(계획정비지구지정) ①구청장은 미관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지역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안에서는 광고물등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 게첨위치등을 통일시키거나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산포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산포하는것. 이 경우 사전에 허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언론보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호외를 산포(공중산포를 제외한다)하거나, 그외 전용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것.

4. 사업소 및 영업소점포등에 경영주가 그 소재지,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 또는 영업의 내용, 상표, 전화번호등을 표시하는 종간판 또는 횡간판

5. 관혼상제, 제례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것.
6. 강연회, 전람회, 음악회등을 위하여 그 회장의 경계내에 표시하는 것.
7.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하지 아니하는 종교의식등 관례상 부득이한 것.
8. 시설물자체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경내에 설치하는 표찰, 고지류등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

제9조(관리자)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광고물의 산포허가를 제외한다)를 받고자 하는자가 서울특별시내에 주소 및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진자중에서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당해광고물등에 관하여 보수 기타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써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사항의 변경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준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내용에 따라 개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허가를 받은자 또는 관리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주소, 성명, 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 및 등록번호의 표시)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그 광고물의 적당한 부분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등록번호 및 제작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시는 별표12의 규격에 의한다.

제12조(허가의취소등) 허가관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수, 이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등이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될 때
2.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13조(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등) ①광고물의 형상, 규격, 면적, 색채, 거리, 구조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은 별표1내지 별표1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을 위한 관광이나 영업안내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거나 한글과 병기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것
2. 국제간의 우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3. 국민정신을 해이하게할 우려가 있는것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
5. 음란 또는 선정적내용으로 성도덕관념을 해할 우려가 있는것
6.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
7.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선전한 것
8. 기타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15조(제거·의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광고물등의 설치자(전단의 산포허가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시설물등의 소유자는 10일이내에 광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3. 보안상, 시각상의 위해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4. 도시미관을 위하여 철거명령을 받았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거, 개수, 이설, 도색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패하였거나 파손되어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2. 오염, 퇴색, 기타사유로 미관풍치를 유지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6조(권한의 위임) 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시) 이 규칙에 의한 지정 및 변경은 이를 고시로써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광고물등은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유효기간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종전)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추가된 지역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공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1)

횡 . 간 판

지역별	건물별	규격	색채	형상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1. 주거지역 2. 교육 및 연구지역 3. 업무지역 4. 보존지역	1. 고층건물 2. 연립건물 3. 영구건물	세로70cm×가로5m이내	1. 단일색 2. 적형광도료는 사용금지	조각형	1.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입체형)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 (측면설치가능) 3. 벽체에서 2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4. 조명은 가능하나 (발광포함) 네온류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일건물내의 표시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허가 배제
	1. 한옥 2. 가건물	70cm×3m 이내	1. 단일색 2. 적형광도료는 사용금지 3. 이면을 가리운 시설의 배색은 단일색 (혹, 적형광도료 사용금지)	1. 평면문자 2. 조각형	1.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입체형)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 (측면설치가능) 3. 벽체에서 2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4. 조명은 가능하나 (발광포함) 네온류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	건물별	규 격	색 채	형 상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산
1. 상업지역 2. 공업지역	1. 고층건물 2. 연립건물 3. 영구건물	70cm × 건물폭 이내	1. 4색이내(적색은 문자면적의 3분의 1 이내)	조각형	1.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입체형) 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체(영업소)의 명을 건물상단(규격이내)에 표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업소는 예외로 한다. (측면설치가능) 3. 벽체에서 2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4. 조명, 발광, 네온류의 사용가능 5. 동일건물내의 표시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1. 한옥 2. 가건물	세로 70cm × 가로 3 m이내	1. 4색이내(적색은 문자면적의 3분의 1 이내) 2. 형광도료사용금지 3. 이면을 가리운 시설배색은 단일색	1. 평면문자 2. 조각물	1.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입체형) 부착하되 4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체(영업소)의 명을 건물상단(규격이내)에 표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 다만, 도로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 (측면설치가능) 3. 벽체에서 2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4. 조명, 발광, 네온류의 사용가능 5. 동일건물내의 표시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지역별	건물별	규격	색체	형상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특수지역	1. 고층 건물 2. 연립 건물 3. 영구 건물 4. 한옥 5. 가건물	건물전면	제한없음 (이면시설 가능)	1. 조각품	1.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 (입체형) 부착하여야 한다. 2. 1개업소에 1개에 한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에 면한 업소는 예외로 한다. 3. 벽체에서 2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4. 조명, 발광, 네온류의 사용가능 5. 동일건물내의 표시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별표2)

종 간 판

지역별	건물별	규격	색체	자체면적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1. 주거지역 2. 교육 및 연구지역 3. 업무지역 4. 보존지역 5. 상업지역 6. 공업지역 7. 특수지역	1. 고층 건물 2. 연립 건물 3. 영구 건물 4. 한옥 5. 가건물	세로2m ×가로 60cm이내	1. 단일색 2. 지(바탕)색은 흑, 적형광도료사용금지 (자(문자)색은 적색 사용금지)	표시면적의 3분의2 이내	1. 2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1층입구 양측2개한 설치 2. 기준규격내 연합광고	허가 배제

(별표3) 돌출광고물

지역별	건물별	규격 돌출	규격 길이	색채	자체면적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1. 주거지역 2. 교육 및 연구지역 3. 업무지역 4. 보존지역	1. 고층건물 2. 연립건물 3. 영구건물	도로경계로부터 1m이내	당해건물지붕높이이하	1. 단일색 2. 지색은 흑적형광도료사용금지(자색은 적색사용금지)	표시면적의3분의2	1. 지상의 높이는 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있는 곳은 지상3m이상 설치 나.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곳은 지상4m이상 설치 2. 1개건물에는 돌출간판 1개만 설치한다. 다만, 건물전면폭 10m이상일때는 10m마다 1개씩 추가할 수 있다. (연합광고가능) 3. 벽면과 광고물은 밀착시켜야 하며, 간격을 둘 필요가 있을 시에는 30m이내로 한다. (규격이내) 4. 한옥이나 가건물 이면을 가리운 시설상단을 지붕으로 간주한다. 5. 철주를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허가 360일
	1. 한옥 2. 가건물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 상업지역 2. 공업지역	1. 고층건물 2. 연립건물 3. 영구건물	도로경계로부터 1m이내	당해건물지붕높이이하	1. 4색이내 2. 〃 3. 적색 3분의 1이내	3분의2		

	4. 한옥 5. 가건물					2m이상 거리를 두고 자기소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6.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의 외부노출을 금한다. (낙하방지시설)	
1. 특수지역	1. 고층건물 2. 연립건물 3. 영구건물 4. 한옥 5. 가건물	1. 도로경계로부터 1.5m 이내 (노폭이 10m 이상인 경우) 2. 기타지역은 1m 이내	상동	제한없음	상동		

(별표4) 공 연 광 고 물

규 격	수 량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세로 : 건물 높이의 1/4이내 가로 : 건물 전면폭의 1/2이내 * 건물이라함은 공연장 전용건물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분	상영프로1 차회프로1	형광도료 사용금지	1. 건물벽면으로부터 30 cm이상 돌출할 수 없으며 낙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광고물하단을 3 m이상으로 한다. 3. 실물의 모형등을 도안할때도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내용은 1개만 표시할 수 있다.	허가공연 종료시까지

(별표5)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1/3이내	3색이내 지색은 흑, 적 형광도료 사용금지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 360일

(별표 6)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종별	규격	지상높이	색채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둘레광고	세로 1 m 이내, 가로 30cm 이내	지상으로부터 3 m 이내	1. 3색 이내 2. 지색은 적형광도료사용 금지	1. 1개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둘레 1, 돌출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도로표지(안전표지)가 첨부된 전주 및 가로등주에는 광고물부착을 금지한다.	허가 360일
돌출광고	세로 90cm 이내, 가로 45cm 이내	지상으로부터 3 m 이상			

(별표 7) 써비스광고물 (Dealer helf)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여부 및 기간
당해광고물 표시면적의 1/3 이하	1. 3색이내 2. 광고판인 경우 지색은 적, 흑형광도료사용 금지	1. 광고의 동일내용은 1개만 표시한다. 2. 광고내용물의 상품류를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배제

(별표8)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지하전차포함)

표시위치	규 격	색 채	자 료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1. 버스(전차) 내부좌석 상부공간	세로 30cm 가로 60cm	1. 지색은 흑, 적형광도료 사용금지	알크지 마니라 보루지	1. 미려한 액자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부벽과 밀착하여야 한다. 3. 1개차내에 동일내용 1개 게시한다.	허가 30일
2. 차량앞 측면 및 후면(자기차량)	문자, 회화표시 면적 1/5 이내 상표: 1/10 이내	1. 지색은 적, 백형광도료사용금지 (상표인 경우제외)	1. 평면문자 2. 철판	1. 차량전면에 광고표시는 금한다. 2. 자가용 및 계약차량에 한하여 자기회사명, 상표, 상품이외 표시는 금한다. 3. 광고판인 경우는 밀착시켜야 한다.	허가 배제
3. 노선버스측면 및 후면	측면: 60cm×90cm이내 후면: 25cm×50cm이내	1. 4색이내 2. 지색은 흑, 적형광도료 사용금지	1. 철판	1. 광고판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타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개차에 측면 각1개 후면 1개이내	허가 180일

(별표9) 지하철역광고물

표시위치	규 격	색 채	자 료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승, 하차장 벽면	세로 90cm 이내 가로 180cm 이내	1. 4색이내(사진인 경우제외)	1. 아크릴 2. 네온(점멸금지) 3. 스라이드	1. 벽면에 밀착하되 벽면으로부터 1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상호거리는 10m이상으로하되 게시위치는 동일되어야 한다. 3. 동일내용 1개이상 게시금지	허가 180일

(별표10) 지 하 도 광 고 물

표시위치	규 격	색 채	자 료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지하도 벽면	세로 120cm 이내 가로 90cm 이내	1. 4-5색이내 (사진인 경우제외)	1. 아크릴 2. 스라이드	1. 벽면에 밀착하되 10cm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상호거리 10m이상으로 하되 게시위치는 통일되어야 한다. 3. 동일내용 게시금지	허가 180일

(별표11) 기 타 광 고 물

종 류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가여부 및 기간
1. 입간판	지상 10m 이하	1. 4색이내 2. 지색은 흑, 적형광 도료사용금지	1.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통행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 (30일 이내)
2. 현수막	폭: 1m 이내 길이: 현장 조화	1. 3색이내 2. 지색은 흑, 적형광 도료사용금지	1. 공중의 통행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높이 4m이상으로 하고 지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프랑카드	〃	〃	1. 〃 2. 지상높이 5m이상으로 한다.	〃
4. 에드바룬	〃	〃		〃
5. 벽보지류	지정벽보 규격이내 (180cm×90cm)	1. 지색은 흑, 적형광 도료사용금지	1. 신고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간만료와 동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지정벽보판이외 첩부금지	신고 (15일 이내)
6. 전단	세로 30cm×가로 40cm		1. 가로에 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중산포제외)	신고(15일이내) 공중산포는 허가(5일이내)

(별표12) 등 록 번 호 표 시 규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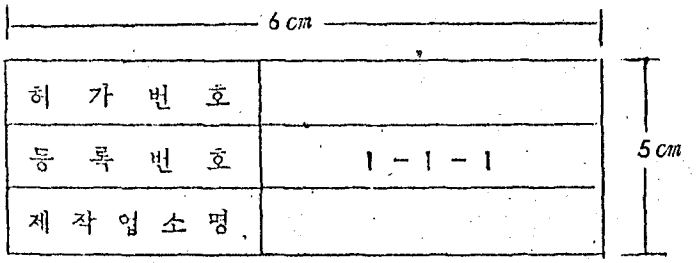

허 가 번 호	
등 록 번 호	1-1-1
제 작 업 소 명	

* 서울특별시-구-등록번호

예시 : 서울-중구-1호등록

구 별 고 유 번 호

구 별	고 유 번 호	구 별	고 유 번 호
서 울	1-0-	서 대 문	1-9-
종 로	1-1-	마 포	1-10-
중 구	1-2-	강 서	1-11-
용 산	1-3-	구 로	1-12-
성 동	1-4-	영 등 포	1-13-
동 대 문	1-5-	동 작	1-14-
성 북	1-6-	관 악	1-15-
도 봉	1-7-	강 남	1-16-
은 평	1-8-	강 동	1-17-

(제 1 호서식)

광고물표시 (게시시설) 허가신청 (신고) 서

신청자	주 소				
	업 소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의종류및수량					
표시 (설치) 의 위치 또는장소					
표시또는설치기간					
착 공 예 정 일		준공년월일			
공 사 주 소		업 소 명		제 작 자 등록번호	
시 공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리자의주소성명				전화번호	
기 타	(공작물설치허가여부표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 . . .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귀하 ㊞

구청장 (대표자)

＊ 주

1. 신청인은 영업소 및 점포등을 경영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일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설치장소의 사진 및 광고물의 천연색도안
   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
   다. 사용건물 또는 게시시설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라. 높이 4 m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공작물 설치허가

(제 2 호서식)

광 고 물 설 치 준 공 신 청 서

허 가 번 호			
착 공 및 준 공 년 월 일			
광 고 물 의 종 류 수 량 , 규 격			
표 시 (설 치) 의 위 치 또 는 장 소			
광고주의주소성명		전화번호	
공 업 시 공 자 의 주소성명 (업소명)		전화번호	
공사감리자의주소 성명 (업 소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의 주 소 성명 (업 소 명)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19 . . .

서울특별시장 광고주 ㊞

귀하

구청장 시공자 ㊞

(제3호서식)

광고물제작업등록신고서

신고인	주소		영업소재지			
	업소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공장소재지						
영업의종목						
종업원수						
기타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 신고합니다.

19 . . .

구청장 귀하 신고인 ㊞

주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감찰 사본
2. 영업장소 소재증명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동장 발행)

(제 4 호서식) 광고물제작업자등록대장

일련번호	등록년월일	영업소		등록자				비고
		명칭	소재지	주소	성명	년령	주민등록번호	

(제 5 호서식)

등 록 필 증

등록제 호

주 소

성 명

영업소		
	명칭	
	종목	
	소재지	
	공장소재지	
	기타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등록필증을 교부합니다.

19 . . .

구청장 ㊞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42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 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운전면허 효력정지 일련번호 제6호 다음에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2월1일부터 적용한다.

운 전 면 허 효 력 정 지

일련번호	위반내용	적용법규	배점	내 용
7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20	신호위반 행위
8	차선위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20	차선에 따라 운행치 않은것과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행위
9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15	1. 전후 좌우주시 태만으로 위해 초래행위 2. 굴곡 및 돌출운전 3. 버스등의 경우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우로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4. 직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때
10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18조	20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행위
11	버스정류장에서의 주, 정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15	버스정류장 주정차방법 위반행위 다만, 단속시는 적발보고서 적용법조란에 "정류장질서문란"이라고 표기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9 호

담수물판매장소지정

수산자원보호령 제 21 조제 1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수물판매장소를 지정하였기 어획물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 지정등에 관한 사무취급요령 제 7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0.2.8

서 울 특 별 시 장

지정번호	판매장소			취급품목
	주소	사업주체	사업장명칭	
0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114-27	사단법인 내수면개발 진흥협회	서울특별시지정 담수물판매장	담수어 (관상어포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40 호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 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34 호 (79.7.26)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성북구하월곡동 23-1, 산 2-88, 산 2-90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동덕여대

3. 면적및규모 :
   기 시행면적 2,942 ㎡ (890 평)
   변경시행면적 5,588 ㎡ (1,690 평)

4. 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하월곡동 23-1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조 용 각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9.11.20
   나. 준공년월일 : 1980. 9.30

6.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41 호

청계천 7 가구역재개발사업시
행인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 호 (77. 6.30) 동제 203 호 (77.6.30) 및 동제 86 호 (78.3.9)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청계천 7 가 제 1,2 지구 외 6 개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 (사업기간연장)을 도시재개발법제 12 조제 2 항 및 제 8 조 (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동법제 16 조제 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 2. .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인가변경내용

청계천 7 가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 (기간연장) 사항

구 분		제 1,2 지 구	제 3,5 지 구
재 개 발 사 업 명 칭		청계천 7 가제 1,2 지구재개발사업	청계천 7 가제 3,5 지구 재개발사업
시 행 구 역 및 면 적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20-4 일대 1,433 평	마 동 217-39 일대 1,240.2 평
주 된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20-4	마 동 217-39
시 행 기 간	변 경 전	1977.6.30-1979.12.31	1978.3.9-1979.12.31
	변 경 후	1977.6.30-1980.6.30	1978.3.9-1980. 6.30
시 행 인 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고시제 203 호 (77.6.30)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시 행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91 흥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영 갑	마 동 217-67 청계천 7 가제 3,5 지구재개발조합 조합장 김 한 주
비 고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79. 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동고시제 48 호 (79.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구 분		제 4 지 구	제 6 지 구
재개발사업명칭		청계천 7 가제 4 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 가제 6,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구역및면적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8 일대 253.8 평	좌 동 204-26 일대 636 평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8	좌 동 204-26
시행기간	변경전	1978.3.9-1979.12.31	좌 동
	변경후	1978.3.9-1980. 6.30	좌 동
시행인가년월일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좌 동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8 청계천 7 가제 4 지구재개발 사업토지소유자 (4 인) 대표 조 현 주	좌 동 204-26 청계천 7 가제 6 지구재개발 조합 조합장 최 석 기
비 고		동고시제 48 호 (79.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좌 동

구 분		제 7,8 지 구	제 9 지 구	제 10 지 구
재개발사업명칭		청계천 7 가제 7,8 지구재개발사업	청계천 7 가제 9 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 가제 10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구역및면적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일대 1,062.7 평	좌 동 213-34 일대 215.8 평	좌 동 220 일대 902.7 평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좌 동 213-34	좌 동 220
시행기간	변경전	1978.3.9-1979.12.31	좌 동	1977.6.30-1979.12.31
	변경후	1978.3.9-1980.6.30	좌 동	1977.6.30-1980.6.30

구　　분	제 7,8 지 구	제 9 지 구	제 10 지 구
시 행 인 가 년 월 일	서울특별시고시 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좌　　동	서울특별시고시제203호 (77.6.30) 시행인가
시 행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청계천 7 가제 7,8 지구재개발조합 조합장 허 용 구	좌　　동 213-34 청계천 7 가제 9 지구 토지소유자 6 인 대표 최 규 영	좌　　동 220 청계천 7 가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16 인 대표 김 진 곤
비　　고	동고시제 48 호(79. 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좌　　동	동고시제 48 호(79. 2.17) 사업시행인가 계획변경 (기간연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

을지로 1 가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73.9.6) 및 동고시 제 382 호 (78.11.30) 동고시 제 434 호 (79.11.22) 에 의거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과 일부 변경결정고시된 을지로 1 가구역 제 6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재개발1과 및 을지로 1 가 제 6 지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 생략)

1980.2.12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다　　음

가. 재개발사업의명칭 : 을지로 1 가구역 제 6 지구 도시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o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101 번지외 22 필지

o 시행면적 : 3,913.9 ㎡

o 건축면적 : 1,242.56 〃

o 대　　지 : 3,558.3 〃

o 연 면 적 : 30,916.36 〃

(옥탑포함, 옥탑제외면적 30,763.87)

층수 : 지상 17 층, 지하 4 층

용도 : 사무실

다.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중구을지로 1 가 101-1 두산기업주식회사

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 - 1982.6.30

마. 시행인가년월일 : 80.2.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시행자 : 중구을지로 1 가 101-1 두산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홍 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토 지

지 번	토지 지목	토지 면적 ㎡	토지 면적 평	토지 가분할지번(평)	현 소유자
순지로1가 98	대 지	175.2	53.0	가 : 11.1 나 : 41.9	동산토건(주)
99	〃	72.7	22.0	가 : 3.2 나 : 18.8	〃
100	〃	310.7	94.0	94.0	(주)미룡상사
101-1	〃	1,428.4	432.1	가 :421.3 나 : 10.8	동양맥주(주)
101-2	〃	317.4	96.0	96.0	〃
102-1	〃	92.6	28.0	28.0	〃
103-4	〃	117.4	35.5	35.5	〃
104	〃	119.0	36.0	36.0	최한갑외 8인
105	〃	115.7	35.0	가 : 21.7 나 : 13.3	동산토건(주)
106	〃	39.7	12.0	가 : 11.8 나 : 0.2	〃
107-2	〃	138.2	41.8	41.8	동양맥주(주)
108-2	〃	51.6	15.6	가 : 14.9 나 : 0.7	두산기업(주)
109-2	〃	8.6	2.6	2.6	이 상 균
109-3	〃	7.3	2.2	2.2	〃
111-2	〃	166.0	50.2	50.2	동양맥주(주)
112	〃	122.3	37.0	37.0	박 규 원
116-1	〃	115.4	34.9	34.9	〃
117-7	〃	54.9	16.6	16.6	〃
113	〃	95.9	29.0	29.0	박충삼외 2인
114	〃	86.0	26.0	가 : 23.6 나 : 2.4	〃
115	〃	95.2	28.7	28.7	〃
117-8	〃	23.4	7.1	7.1	노 희 정
95-4	도 로	160.3	48.5	48.5	시 유 지
계		3,913.9	1,183.8		

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현 주 소	근 저 당 권 자	주 소
종로구수송동 108-4	한국외환은행 본점	종로구관철동 10
〃	〃	〃
을지로 1가 100	조흥은행 본점	남대문로 1 가 14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1번 한일은행 본점 1번 조흥은행 본점	남대문로 2 가 130 남대문로 1 가 14
〃	조흥은행 본점	〃
〃	〃	〃
〃	〃	〃
강남구삼성동차관아파트22동	동산토건(주)	종로구수송동 108-4
종로구수송동 108-4	한국외환은행 본점	종로구관철동 10
〃	〃	〃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중구을지로 1 가 101-1		
중구을지로 1 가 109-2		
〃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조흥은행 본점	남대문로 1 가 14
용산구후암동 140-1	(주) 민속관광	용산구한강로 2 가 318-2
〃	〃	〃
〃	〃	〃
용산구후암동 244-88		
〃		
〃		
남대문로 1 가 92-1		

2. 건 물

지 번	건 축 물			
	용 도	구 조	면 적(평)	소 유 자
을지로1가 98	영업용	목조와즙 2층	66.5	동산토건(주)
99	사무실	연와조와즙 2층	37.5	〃
100	영업용	철근콘크리트 4층	162.6	(주)미풍상사
〃	〃	부속목조와즙 2층	33.0	〃
101-1	〃	철근콘크리트와즙 3층	58.8	동양맥주(주)
〃	〃	부속목조와즙 2층	53.2	〃
101-2	〃	목조와즙 3층	163.2	〃
102-1 103-4	〃	부속목조와즙 2층	50.0	〃
104	사무실	철근콘크리트및영업리트 5층	139.9	최한갑외 8인
105	영업용	목조와즙 1층	16.0	동산토건(주)
106	〃	〃	5.5	〃
107-2	〃	부속목조와즙 1층	9.0	동양맥주(주)
〃	〃	〃	9.0	〃
108-2	〃	연와조와즙 1층	22.8	두산기업(주)
111-2	〃	철근콘크리트및연와조 평옥	85.7	동양맥주(주)
112	〃	연와조와즙 1층	111.0	박 규 원
116-1	〃	〃	34.9	〃
117-7	〃	연와조스레트	16.6	〃
113 114 115	〃	철근콘크리트 평옥	515.0	박중삼외 2인
계			1,644.2	

현 황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주 소	근 저 당 권 자	주 소
종로구수송동 108-4	한국외환은행본점	종로구관철동 10
〃	〃	〃
중구을지로 1 가 100	조흥은행 본점	남대문로 1 가 14
〃	〃	〃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		
〃	조흥은행본점	남대문로 1 가 14
〃	〃	〃
강남구삼성동차관아파트 22 동	동산토건(주)	종로구수송동 108-4
종로구수송동 108-4	한국외환은행본점	종로구관철동 10
〃	〃	〃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		
을지로 1 가 101-1		
영등포구영등포동 582	조흥은행본점	남대문로 1 가 14
용산구후암동 140-1	(주)민속관광	용산구한강로 2 가 318-2
〃	〃	〃
〃	〃	〃
용산구후암동 244-88		

◎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9.12.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암제 1 구역외 1 개구역에 대하여
2.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고자 서울시공고제 419 호 (79.12.18) 로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바 있으나 이의가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제 30 조 및 동법 시행령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 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한다.

1980.2.1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고시내역

구역명칭	위치	면적 (㎡)	비고
후암제 1 구역	용산·후암101-6일대	141,200	실시계획인가
홍제제 6 구역	서대문·홍제369일대	33,420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1.12.31 까지
라. 설계도시및재원조서 : 별첨 (생략)
마.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생략)
바. 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범화종합 소매시장	강남구대치동 623,624	4,378.62 ㎡ (1,324.5평)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호 ('79.12.10)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거여소매시장	강동구마천동 181-2 일대	4,084 ㎡ (1,236평)	

※ 별첨 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6 호

청계천 7 가제 1,2 지구재개발 사업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3호('77.6.30)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된 청계천 7 가제 1,2 지구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2.11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 : 중구신당동 220-4 일대

나. 사업명칭 : 청계천 7가제 1,2지구 재개발사업

다. 사업시행인가및년월일 :
1977.6.30 (서울시고시제 203 호)

라. 시행자주소,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91
2) 성명 : 토지소유자대표 흥인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영갑

마. 준공면적
1) 토 지 : 대지 4,144.3 ㎡
도로(공공용지) 604.7 〃
계 4,749 ㎡
2) 건 물 : 연면적 14,173.669 〃

바. 준공내역 : 별첨조서 및 현황측량도 (서울시재개발 1과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38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2.13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가. 남부소방서 분임경리관의인
나. 남부소방서 분임물품출납원의인
〃 분임지출원의인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소방관징계위원회의인
2. 사용개시일 : 1980.2.25
3. 공인의인영 :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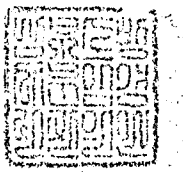	
공인명	남부소방서 분임경리관인	남부소방서분임 물품출납원인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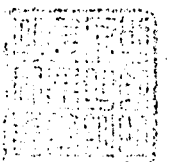	
공인명	남부소방서 분임지출원인	남부소방서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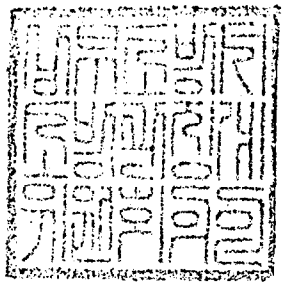
공인명	남부소방서소방관장계위원회의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39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2.13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징수관인
2. 사용개시일 : 1980.2.25
3. 공인의인영 :

인영	
공인명	서 울 특 별 시 자 동 차 등 록 사 업 소 징 수 관 인